

## 忠清北道議會議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(案)

忠清北道議會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 4 條 (旅費支給)를 다음과 같이한다.

第 4 條 (旅費支給)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 (이하 “本會議”라 한다.)

또는 委員會에 出席할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.

### 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新 · 舊 條 文 對 比 表

現 行	改 正
<p>第 4 條 (旅費支給) 議員이 議會의 會議(이하 “本會議”라한다.)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.</p>	<p>第 4 條 (旅費支給) 議員이 <u>會期中 議會의 會議</u>(이하 “本會議”라한다.) 또는 <u>委員會에 出席할때와</u>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.</p>